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3064호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재열람 공고

-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사업 -

1. 품질시험소 별관부지(서초구 우면동 141번지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및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'19.9.18),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'19.9.25) 개최 결과 의견을 반영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9년 12월 12일
서울특별시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나.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: 서울시청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☎ 02-2133-8477

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구 분		면 적 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5,098.7	5,098.7	우면동 141 연구시설④-1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5,971.8	감) 5,098.7	873.1	도로 873.1㎡ 대로2-104호

○ 변경 사유서

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기정	변경			
서초구 우면동 141번지	자연녹지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5,098.7	200%	· 양재R&D혁신지구 내 공공의 선도시설 조성 사업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조정필요

2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- 가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나)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 - ※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및 변경사유서로 같음
- 다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 - (1) 연구시설 (변경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④	연구시설	우면동142일대	35,366	-	35,366	82.2.18 (건고 76)	자연녹지지역
변경	④	연구시설	우면동142일대	35,366	감) 5,098.7	30,267.3	82.2.18 (건고 76)	자연녹지지역
	④-1	연구시설	우면동141	-	증) 5,098.7	5,098.7	82.2.18 (건고 76)	제2종 일반주거지역

■ 건축물의 범위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건축물의 규모		
				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층 또는 m)
신설	④-1	연구시설	우면동 141	60%이하	200%이하	35m이하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④	연구시설	35,366.0㎡ → 30,267.6㎡ 감) 5,098.7㎡	· 기 결정된 연구시설④을 공공 선도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우면동 141번지를 제외한 우면동 142번지 일대를 연구시설④로 변경 결정
④-1	연구시설	0㎡ → 5,098.7㎡ 증) 5,098.7㎡	· 기 결정된 연구시설④을 공공 선도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우면동 141번지를 연구시설④-1로 변경 결정

라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구분	위치	면적(㎡)	기준/허용용적률	건폐율	높이	비고
기정	우면동141	5,971.8	40%이하/50%이하	20%이하	15m이하	연구시설④
변경	우면동141	5,098.7	- /200%이하	60%이하	35m이하	연구시설④-1

※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873.1㎡ 도로편입 예정

※ 기타사항 게재 생략 :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

라. 관련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)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(☎2133-847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3066호

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

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예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2월 12일
서울특별시장

1. 예고일 : 시보공고일

2. 예고내용

○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

종별	종목명칭	인정 대상자		
		성명	성별	생년월일
무형문화재(기능/개인)	제17호 은공장	황갑주	남	1939. 5. 19

3. 예고기간 : 공고일부터 30일

4. 예고사유 : 제17호 은공장 보유자 인정 대상자 황갑주

황갑주는 이왕가미술품제작소에서 활동했던 김정섭(金鼎燮, 전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